

울산 다운2지구 우미 Lynn **더시그니처**

본 안내문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참고자료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구 분	내 용															
대상자	<p>[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0.)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 · 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관명</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등</td> <td>국가보훈처 울산지방보훈청 보상과</td> <td rowspan="2">청약통장 필요없음</td> </tr> <tr> <td>장애인</td> <td>울산광역시청 · 부산광역시청 ·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장기복무제대군인</td> <td>국가보훈처 울산지방보훈청 보상과</td> <td rowspan="3">입주자저축 가입 및 자격요건 충족</td> </tr>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기관명	비고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울산지방보훈청 보상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울산광역시청 · 부산광역시청 ·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울산지방보훈청 보상과	입주자저축 가입 및 자격요건 충족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구분	기관명	비고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울산지방보훈청 보상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울산광역시청 · 부산광역시청 ·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울산지방보훈청 보상과	입주자저축 가입 및 자격요건 충족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본 내용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및 편집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